

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– 항공비 지원 가이드라인 (24.07.15)

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항목 중 “항공비”에 대한 지원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.

항공비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해외 학술대회의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항공비 지원을 받도록 제도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며, 공정경쟁규약의 학술활동에 필요한 지원목적을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.

[항공비 지원 기준]

학술대회 항공비 전액 지원은 학술대회 개최일 기준 -2일에서 종료일 +1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.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, 항공비는 20% 또는 50%가 차감됩니다.

본 가이드라인은 **2024년 9월에 개최되는 학술대회부터** 적용됩니다.

1. **항공비 100% 지원:** 학술대회 개최일 기준 -2일부터 +1일까지
2. **항공비의 20% 차감:** 전액 지원범위보다 +1일부터 +5일 초과할 경우
3. **항공비의 50% 차감:** 전액 지원범위보다 +6일 이상 초과할 경우

예시: 학술대회 일정이 5월10일부터 5월13일까지인 경우

(1) 항공비 전액 지원

5월 8일(-2일)부터 5월 14일(+1일)까지 출발 및 도착하는 항공편

(2) 차감 예시

① 20% 차감

- ✓ 예시1) 5월 7일(-3일) 출발하여 5월 15일(+2일) 도착하는 경우
→ 지원범위 기준 +2일 초과
- ✓ 예시 2) 5월 8일(-2일) 출발하여 5월 17일(+4일) 도착하는 경우
→ 지원범위 기준 +3일 초과

② 50% 차감

- ✓ 예시 1) 5월 5일(-5일) 출발하여 5월 17일(+4일) 도착하는 경우
→ 지원범위 기준 +6일 초과
- ✓ 예시 2) 5월 1일(-9일) 출발하여 5월 14일(+1일) 도착하는 경우
→ 지원범위 기준 +7일 초과

※ 항공료 외 식비, 숙박비 등 여타 참가지원 기준에 진행되던 기준에서 변동 없이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학술대회 참가자 정산 매뉴얼 (24.07.15)

본 매뉴얼은 공정경쟁규약 제9조(학술대회 참가지원), 실무운용지침 제9조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특히 학술대회 참가지원과 관련하여, "학술대회 참가지원이 여행.관광. 여가활동 지원 등 향응이나 접대와 결부되어서는 아니 되고,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"는 규약 제9조 2항4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지원 자격: 보건의료 전문가에 대한 발표자, 좌장, 토론자

- ①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
(1개의 초록으로 2명이 참석할 경우, 주저자는 꼭 포함되어야 함)
- ② E-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발표시간이 명시된 1인 (질의응답 시간 가능)

2. 지원 항목: 실비의 교통비, 등록비, 식대, 숙박비

- ① 교통비
 - *국외 개최 학술대회: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국제항공운임
현지교통비: 학술대회 기간 내 최대 15만원
 - *국내 개최 학술대회: 목적지까지 이코노미 국내 항공료, KTX, 고속버스
- ② 등록비: 사전등록 원칙
- ③ 식 대: 식사시간대에 현지 식당의 영수증, 1식 1장 5만원
- ④ 숙박비: 미니바, 영화, 세탁, 전화 등 숙박에 부수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
기간은 학술대회 개최 1일전부터 종료일까지 지원 가능
Early Check-In & Late check-Out Charge 지원불가
 - *국외 개최 학술대회: 1박당 35만원(세금 및 봉사료 포함)
 - *국내 개최 학술대회: 1박당 20만원(세금 및 봉사료 포함)

3. 정산 제출 서류(학술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)

- ① 참가자의 자격 및 학술대회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실비의 영수증
- ② 학술대회 참가 명단(개인별 지출내역과 결과보고서)
- ③ 학술대회 사전등록비표
- ④ 참가자가 해외 연수 중인 경우: 해외연수 확인서 & 사유서 제출
 - 정산 시 적용환율: 학술대회 시작 전일 외환은행 현금매입 최고고시가
 - 학회가 취합하여 협회에 전달한 증빙자료를 최종본으로 간주하여, 보완요청이나 재 요청 없이 정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정산 서류 제출 시 증빙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1) 참가자격 제출서류:

- 학술대회 주최측에서 보내온 연자, 발표자(포스터 발표자 포함),좌장,토론자 선정 메일
- e-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발표시간 명시된 증빙 필요
- 자신의 이름이 명시된 초록 사본 & 발표자가 명시된 아젠다
- 발표자가 아닌 저자 1명만 참석할 경우 발표확인 사유서

- 1개의 초록으로 2명이 참석할 경우, 2명은 주저자와 발표자로 주저자가 꼭 포함되어야 함
- 발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e-포스터 발표자 1인만 지원

(2) 교통비

*국외 개최 학술대회:

-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, 귀국일자 확정요금
- 학술대회 개최일 기준 -2일에서 종료일+1일까지 전액지원(항공비 가이드라인 참조)
- 학술대회 기간 내 최대 15만원의 현지교통비

*국내 개최 학술대회: 여정이 적힌 내역서, 영수증, 보딩패스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항공료, KTX, 고속버스

● 항공권 제출서류: 보딩패스 & 항공권 구입 영수증 & 이티켓

- ✓ 보딩패스 분실 시: 항공사 발행 탑승 확인서 or 마일리지 적립 확인서 or 출입국확인서
- ✓ 개인 마일리지로 좌석을 업그레이드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내역
- ✓ 항공료를 지원받지 않더라도, 숙박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티켓 or 보딩패스(사본가능)
- ✓ 여행사 수수료, 수화물비 지원 불가

● 현지교통비 제출서류: 이용 날짜, 행선지 명시된 영수증 (출도착 행선지 수기작성 가능)

- ✓ 공항에서 호텔간 왕복교통비와 숙소와 행사장소간 교통비로 1일 왕복1회 한정
- ✓ 학술대회 당 15만원 이내 (국내학술대회 참석 시는 지원되지 않음)

(3) 등록비 제출서류: 등록 확인증 & 항목 확인되는 등록비 납부 영수증

- ✓ 사전 등록을 원칙으로 함
- ✓ 회원가입비는 지원불가.
단, 회원가입비+사전등록비의 금액이 비회원 등록비보다 저렴할 경우 지원가능
- ✓ 등록비 항목 중 Dinner Meeting/Gala Party는 식비로 지원

(4) 식대 제출서류: 이용 날짜, 시간이 명시된 식비영수증

- ✓ 식사시간대에 현지 식당에서 1식 1장 5만원
- ✓ 영수증에 Guest 인원이 1인이 아닌 경우 1/n 적용

(5) 숙박비 제출서류: 호텔명이 명시된 체크인/아웃 목록 & 결제영수증

- ✓ 국내: 1박당 20만원, 해외: 1박당 35만원이내 (세금 및 봉사료 포함)
- ✓ 호텔 숙박비에 조식 포함이 명시된 경우만 조식 인정
- ✓ 미니바, 영화, 세탁, 전화, 인터넷 등 숙박에 부수되는 비용 지원불가